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의거 교원의 교육·연구·봉사활동에 관한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가영역 및 기준)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의 3개영역으로 구분 한다.

1. 교육업적: 교육업적의 평가는 수업담당 실적(책임시수 비율), 휴강 및 보강, 강의 계획서 제출, 성적 제출,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 강의평가 및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

2. 연구업적

가. 인문·사회계열 교원의 연구업적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 제38조 1항에서 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며, 그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독논문 주저자 국제전문학술지 200% 국내전문학술지 100%

2인논문 주저자 국제전문학술지 150% 국내전문학술지 60%

2인논문 교신저자 국제전문학술지 100% 국내전문학술지 40%

(예능계열 교원의 논문도 동일하게 적용)

나. 음악분야에 속한 교원의 연구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의 대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된 장소에서의 독창회, 독주회, 개인발표회 및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회는 100%, 전곡 춤주, 전곡 춤창 또는 이에 준하는 작품발표회는 70%를 인정하고, 2인 공동발표회는 50%를 인정한다. 국외에서의 연주일 경우, 공인된 정상급 단체의 초청 공연과 이에 준하는 연주일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나)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가지는 단체 또는 나호 (가)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주연 및 협연 50%,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의 주연, 연출, 또는 이에 준하는 작품 발표는 100%를 인정하며, 오페라의 조연은 50%를 인정한다.

(다) 공인된 국제음악제에 독주자, 독창자, 협연자 또는 발표자로 초대되어 연주했을 때에는 70%를 인정한다.

(라) 나호 (가)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독주, 독창, 춤주, 춤창, 작품발표 또는 편곡은 15%를 인정한다. 단, 관현악단, 합창단의 단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나호 (가)의 100%에 해당하는 발표회의 전곡 반주 또는 지휘는 30%를 인정하고, 50%에 해당하는 발표회의 전곡 반주 또는 지휘는 15%를 인정한다.

(바) 광역시급 이상의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정상급 단체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위 해당 항목 실적물의 100%를 인정한다.

(사) 동일 내용의 연주(개인발표회에 한함)인 경우, 두 번째 연주는 해당점수의 50%를 인정한다.

(아) 교회 및 기타 장소에서 발표된 것은 순수한 예술발표에 한해서 그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예배 또는 선교행사 등의 일부로 발표 된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자) 실용음악 공연의 경우, 단독공연은 공연 전체의 주연주자 또는 주발표자로 참여한 50분 이상의 공연을 100% 인정한다. 공연주체가 1명인 단독공연이거나 밴드 리더(지휘)일 경우 100% 인정한다. 공연 구성원이 4인 이하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50%,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30%, 10인 이상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5%, 객원 혹은 세션 공연(악기연주 및 코러스)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5%, 게스트 출연 공연(20분 미만이거나 3곡 이하)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0% 인정한다.

(차) 승진 및 재임용시 독창회, 개인발표회가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3.1.)

3. 봉사업적: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 교내외 및 학회 및 기타활동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
4. 종합 평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자의 교육, 연구, 봉사영역 평가결과를 수합, 평균치를 산출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종합의견을 교원업적 종합평정표에 기술한다.

다. 교육부 및 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관련 연구보고서도 학교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연구업적의 인정 범위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9.1.)

(가) 연구업적 인정비율은 국내 주요 전문학술지에 준하는 범위내로 하되, 구제적인 적용 범위는 보고서의 등급 및 역할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총장이 정한다.

(나) 수년에 걸쳐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경우 최종 보고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평가 관련 연구보고서의 최종보고서가 보고되지 않거나 최종보고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구영역점수에서 제외된다.

(라) 보고서는 사안에 따라 공동연구 인정비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라. 교원은 학교 정책상 보직 수행(교무위원)을 맡을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교원인사위원장의 의견을 참조로 하여 총장이 정하되 최대범위는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직의 수행 기간에 비례해서 정한다.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개정 2015.3.1.)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겸무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2015.3.1.)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적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관련 제 규정의 개정

3.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업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관련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 ⑤ 심사위원 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3장 업적의 평가

제7조(평가기준)교원업적평가의 기준은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한다.(개정2015.3.1.)

제8조(교육업적의 평가기준) 교육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별표 1>에 의한다.

(별표 개정2020.3.1.)

제9조(연구업적의 평가기준) 연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별표 개정2019.3.1.,2023.9.1.)

제10조(봉사업적의 평가기준) 봉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별표 3>에 의한다.

(별표 개정2020.3.1.)

제11조(교원업적 종합 평점표) 교육, 연구, 봉사영역 평가결과를 수합, 평균치를 산출 및 판정은 <별표 4>에 의한다.(별표 개정 2020.3.1)

제4장 업적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2조(평가회수 및 기간) 교원업적의 평가는 2년 단위로 실시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15.3.1.)

제13조(평가대상의 업적 및 구비서류) ①평가대상의 업적은 본인이 업적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경과하거나 증빙자료 및 서류가 미비된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교원업적평가표
 - 가. 교육업적평가표<별표 1>
 - 나. 연구업적평가표<별표 2>
 - 다. 봉사업적평가표<별표 3>
2. 증빙서류
3. 기타 관련 자료

제13조의2(증빙자료 제출) 연구업적의 평가를 위해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9.1.)

1. 학술논문: 학술지 또는 논문집 원본과 별쇄본(또는 사본, 원본 대조필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과 등재여부 증빙서류, 전자 출판의 경우는 CD(저장매체)로 제출

가.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 첨부

나. 국외 학술지의 경우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됨을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 첨부

2. 학술대회 발표: 학술대회 초록집 원본(CD 가능) 또는 원본 대조필한 사본
3. 공연·발표: 팜플렛 원본과 관계 증빙자료(영상물 녹화자료, 사진, 악보, 슬라이드, 관련 문서 등. 다만, 녹화자료는 연주회장의 분위기와 청중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4.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임용일 1개월전까지 연구실적을 제출
5. 기타: 관련 증빙자료

제13조의 3(허위자료 및 표절관련) (신설 2023.9.1.)

- ①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연도의 연구업적 평가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한다.
- ② 연구실적을 표절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 과제의 업적평가를 0점으로 처리한다.
- ③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허위자료 및 연구실적 표절의 경우 연구비 전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업적의 평가방법) ① 교원의 업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이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1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업적에 대한 실적을 교무처 업적평가조사에 의거 작성하여, 매학기 수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위원장의 확인 검토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 ② 위원장은 매학기 수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2015.3.1.)

제16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재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7조(평가예외) 연구 년, 장기해외연수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며 교육 및 봉사업적은 직전(또는 직후) 학년도의 업적으로 갈음한다.

제17조의 1(휴직예외) 심사대상자의 재임용기간 중에 휴직 기간(제17조에 의한 휴직 제외)이 포함될 때에는 재임용심사 기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한다.(신설2014.9.1.)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기타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등의 심사에 활용한다.

- ② 평가결과는 우수교원 표창 및 포상, 연구년 선발, 연구비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9.1.)

③ 평가결과에 따라 업적 우대 교수를 선정하여 책임시수 경감, 교수연구년 우선 배정, 특별연구비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등의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1.)

제19조(재임용 기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 단 연구업적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개정 2012.7.21.)

직 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 교수	최근 6년	240	600	240
부 교수	최근 6년	240	600	240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에 대하여 심의할 시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승진임용 기준)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21., 2023.9.1.)

구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교수→부교수	최근 6년	360	800	360
부교수→교수	최근 6년	420	900	420
정년보장	최근 6년	480	1,000	480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① 휴직 만료 후 복직한 교수가 휴직기간이 재임용 심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②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신설 2013.8.9.)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의거 별표1 교원업적평가 항목 및 평점,

제10조에 의거 별표 3 봉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20조(승진임용기준)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평가 영역 (배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항목별 배점) *해당 번호에 ○표 할 것	확인	평가자 평점
강의(60) *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	책임시수 비율(10)	① 기준시수 충족(10) ② 70%이상 충족 (5) ③ 70% 미만 (0)	책임시수: 담당시수:	
	휴강 및 보강(10)	① 휴강 없음: 보강 (10) ② 휴강 후 보강 없음(5) ③ 2회 이상 무단휴강(0)	1과목 임의선정 휴강 무: 휴강 회: 보강 회:	
	강의계획서 제출(10)	① 전 과목 제출 (10) ② 1~2과목 미 제출(5) ③ 전 과목 미 제출 (0)	과목 수: 제출 수:	
	성적 제출(10)	① 기간 내 제출 (10) ② 1~2일 지연 (5) ③ 3일 이상 지연 (0)	기간준수: 지연일수: 일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10)	① 전 조건 충족(10) ② 일부조건 충족(5) ③ 전 조건 미충족(0)	1과목 임의선정 상대: % 절대: %	
	강의 평가(10)	① 만족도 85~100(10) ② 만족도 70~84 (7) ③ 만족도 50~69 (3) ④ 만족도 0~49 (0)	1과목 임의선정 만족도 %	
학생지도 (40) *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	신입·편입생 유치 기여도(20)	① 4명 이상 (20) ② 2~3명 (10) ③ 1명 이하 (0)	당해연도 신입생 명 편입생 명 계 명	
	재학생 지도관리(10) (지도학년: 학년)	① 재학률 90% 이상(10) ② 재학률 80~89% (5) ③ 재학률 79% 이하 (0)	직전학기 대비 재학률 %	
	진학 및 취업지도(10) (증빙자료 첨부)	① 60% 이상 (10) ② 20~59% (5) ③ 19% 이하 (0)	당해연도 졸업생 진학·취업률 %	
계 100점(해당되지 않는 항목: 총점 조정)			총점	점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四 1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2020학년도 임용계약자부터)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세부항목		
교육내용 및 과정 (60)	강의계획서	기한내 제출	5		전과목 제출:5점 2과목 미제출:3점	1과목 미제출:3점 3과목이상 미제출:0점	
	강의평가 결과	만족도 90% 이상	10		1과목 임의 선정	매 학기당 계산 4단계 등급화	
		만족도 80% ~ 90%	7				
		만족도 60% ~ 79%	3				
		만족도 0% ~ 59%	0				
	강의 이행 상태	휴강 및 결강	5		휴강없거나 결강신고 후 보강:5 휴강 후 보강 없음: 0점 무단 결강:-5점(한 강의당)		
	강의부담	책임시수	10		학기당 책임시수 이상은 10점 학기당 책임시수에 미달시 학점 당 3점 감점		
	성적평가 적절성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	5		1과목 임의 선정 전 조건 충족(10) 일부조건 충족(5) 전 조건 미충족(0) * 1과목 임의 선정		
	성적입력	기한내입력	5		입력기한 초과일수*-1		
	주당 수업 일수	주당 4일 이상	10		학기당 평균(반올림)		
		주당 3일	5				
		주당 2일	3				
		주당 2일 미만	1				
교육 관련 수상 및 상별 *교육관련 수상일 경우에만 인정			10		국제 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 서훈, 포상: 10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 서훈, 포상: 5점/건(10점이 상한)	국제 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 서훈, 포상: 10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 서훈, 포상: 5점/건(10점이 상한)	
			-10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내 등의 수상 2점/건 종정계를 받았을 경우		
			-5		경정계를 받았을 경우		
	학습상담		10		학기 단위로 계산하여 상담일지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때만 인정 2명당 1점(10점이 상한)		
학생지도 (40)	학내행사 참여도		5		MT.OT, 출업식, 연주회, 축제, 세미나 등 본인이 참여현황일지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인 경우 5점 학위논문은 석사는 1명당 2점, 박사는 1명당 5점 취업1명당 5점(10점이 상한) 증빙서류 제출	
	지도교수, 학위논문지도 취업지도		10				
	신입 편입생 유치도		15				
					5명이상(15), 3명이상(10), 1명이상(5) 없음(0) 증빙서류 제출		
총계			100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정명인

별표 2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인문·사회·사범계)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표 할 것	확인	평가자 평점(%)
학술 논문	① 국제 학술지 ② 국내 학술지 ③ 기타 학술지	① 150% ② 100% ③ 50%	① ② ③	
계				

* 기타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제외한 전공분야 학술단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논문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예능계)

구 분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표 할 것	평가 기준	확인	평가자 평점(%)
개인 발표회	독주, 독창회(10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지휘, 전곡 반주(30%)	위와 동일		
공동 발표회	전곡 중주, 전곡 중창(7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2인 공동(50%)	위와 동일		
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주연, 협연, 연출, 작품 발표(10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조연(50%)	위와 동일		
국제 음악회	독주, 독창, 협연, 발표(70%)	공인 국제음악제		
종합 연주회	독주, 독창, 중주, 중창, 작품 발표, 편곡(15%)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100%)	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개인 발표회 (동일 내용 두 번째)	독주, 독창(5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지휘, 전곡 반주(15%)	위와 동일		
계				%

*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 2 (2019년도 임용계약자부터)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인문사회계열)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0표 할 것	확인	평가자 평점(%)
학술논문(단독)	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① 200% ② 100%	① ②	
학술 논문 (2인 논문 주저자)	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① 150% ② 60%	① ②	
학술논문 (2인 논문 교신저자)	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① 100% ② 40%	① ②	
계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 2 (2019년 임용계약자부터)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예능계열)

1. 클래식

구 분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표 할 것	평가 기준	확인	평가자 평점(%)
개인 발표회	독창회, 독주회 (10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지휘, 전곡 반주(30%)	위와 동일		
공동 발표회	전곡 중주, 전곡 중창 (7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2인 공동(50%)	위와 동일		
	지휘, 전곡 반주(15%)	위와 동일		
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주연, 협연, 연출, 작품 발표(10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조연(50%)	위와 동일		
국제 음악회	독주, 독창, 협연, 발표 (70%)	공인 국제음악제		
종합 연주회	주연 및 협연(5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독주, 독창, 중주, 중창, 작품 발표, 편곡(15%)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100%)	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개인 발표회 (동일내용 두번째)	독주, 독창(5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지휘, 전곡 반주(15%)	위와 동일		
계				%

2. 실용음악 공연

구 분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표 할 것	평가 기준	확인	평가자 평점(%)
단독공연	주연주자, 주발표자 밴드리더(지휘)(100%)	50분이상 공연		
4인이하 공연	공연구성원 (50%)	위와 동일		
5인이상 9인이하	공연구성원 (30%)	위와 동일		
10인 이상	공연구성원 (15%)	위와 동일		
객원, 세션	악기연주, 코러스(15%)	위와 동일		
출연공연	게스트(10%)	20분미만 또는 3곡이하		
계				%

*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 2 (개정: 2023년 9월 1일)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인문사회계열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배점 %) *해당란에 O표 할 것	확인	평가자 평점(%)
학술논문(단독)	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① 200% ② 100%	① ②	
학술 논문 (2인 논문 주저자)	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① 150% ② 60%	① ②	
학술논문 (2인 논문 교신저자)	① 국제 전문학술지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① 100% ② 40%	① ②	
※대학평가연구보고서	① 기관평가인증 ② 기타()	① % ② %	① ②	
※보직수행(교무위원)	① 처장 ② 대학원장(신대원장) ③ 기타()	%		
계				

* 대학평가연구보고서와 보직수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경우에만 가능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 2 (개정: 2023년 9월 1일)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예능계열)

1. 클래식

구 분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O표 할 것	평가 기준	확인	평가자 평점(%)
개인 발표회	독창회, 독주회 (10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지휘, 전곡 반주(30%)	위와 동일		
공동 발표회	전곡 중주, 전곡 종창 (7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2인 공동(50%)	위와 동일		
	지휘, 전곡 반주(15%)	위와 동일		
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주연, 협연, 연출, 작품 발표(10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조연(50%)	위와 동일		
국제 음악회	독주, 독창, 협연, 발표 (70%)	공인 국제음악제		
종합 연주회	주연 및 협연(5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독주, 독창, 중주, 종창, 작품 발표, 편곡(15%)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100%)	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개인 발표회 (동일내용 두번째)	독주, 독창(50%)	국내·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회장		
	지휘, 전곡 반주(15%)	위와 동일		
계				%

2. 실용음악 공연

구 분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O표 할 것	평가 기준	확인	평가자 평점(%)
단독공연	주연주자, 주발표자 밴드리더(지휘)(100%)	50분이상 공연		
4인이하 공연	공연구성원 (50%)	위와 동일		
5인이상 9인이하	공연구성원 (30%)	위와 동일		
10인 이상	공연구성원 (15%)	위와 동일		
객원, 세션	악기연주, 코러스(15%)	위와 동일		
출연공연	게스트(10%)	20분미만 또는 3곡이하		
계				%

*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평가보고서 업적 및 중요보직수행이 있는 경우

구 분	평가 항목(배점 %) *해당란에 O표 할 것	평가 기준	확인	평가자 평점(%)
※대학평가연구보고서	기관평가인증, 기타()			
※보직수행 (교무위원)	처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기타()			

※ 대학평가연구보고서와 보직수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경우에만 가능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 3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봉사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

평가영역(배점)	평가 항목(항목별 배점) *해당란에 O표 할 것	피평가자 평점	확인 인	평가자 평점
교내 봉사 (50) *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	① 처장급 이상(30) ② 학과장·연구소장급(20) ③ 각종 위원회 위원 (10) ④ 학생 지도교수(10) ⑤ 각종 회의 참석(5) (무단 불참시 회당 -5점) * 중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외 봉사 (20)	증빙자료 첨부 ① 자차·공공단체 위원(10) ② 각종시험 채점위원(공인 대회, 콩쿠르 심사위원) (10) *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	① ②	① ②	
학회 활동 (20)	증빙자료 첨부 ① 학술단체·기관 임원(10) ② 학술단체·기관 회의 사회, 발표, 토론 등 (5) ③ 학술단체 회원(1학회당 5점) *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	① ② ③	① ② ③	
기타 활동 (10) *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	① 학사행정 협조(5) ② 동료와의 인화관계(5)	①5. 4. 3. 2. 1. 0. ②5. 4. 3. 2. 1. 0. 계점	① ② 계점	
계		100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3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봉사업적 평가항목, 기준 및 평점(2020학년도 임용계약자부터)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세부항목
교내봉사 (50점) 중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	보직	처장, 대학원장	15		①보직을 경임할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고 상위 보직에만 점수를 인정함 ②연간 6개월 미만은 50%만 인정
		학과장, 관장	10		
		부설기관장, 연구소장	10		
	위원회	위원장	10		위원장 및 위원은 중복되더라도 가산점은 없음
		위원	5		
	채플	참석율	20		주간 경건회 참석율 따라 적용(매학기당) 80%이상: 20, 60%이상: 15 50%이상: 10 30%이상: 5
		참석율	20		
	교직원 기도회 및 회의참석	참석율	20		전체 교수회의, 교직원회의, 교직원기도회 등 참석율로 적용 90%이상: 20, 80%이상: 15 70%이상: 10 60%이상: 5 50%이상: 1
		참석율	20		
교외봉사 (50점) * 증빙자료 첨부 중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	국내외 학회 및 협회 활동	회장, 부회장 임원, 편집위원장	10		①동일 학회, 협회 및 단체내에서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고 최고 점수 만 부여한다. ②종교단체는 개 교회를 제외한 교회협의회(체) 만 인정 ③논문심사위원은 1회당 5점 (총 2회까지 인정). 공인대회, 콩쿠르심사위원도 1회당 5점 (총 2회까지 인정)
		이사, 간사, 편집위원, 분과위원장	10		
		논문심사위원	10		
	정부, 자치 공익단체 종교단체	임원	10		④연간 20점까지만 인정
		위원	10		
		회원	5		
	언론매체 활동	T.V, 라디오 방송출연	10		①TV나 라디오 출연의 경우 자막이나 음성으로 본 교 교수임이 밝혀져야 점수 인정 *교회소속으로 설교 방송은 불인정 ②연간 20점까지만 인정
		일간지, 잡지, 기고	10		
		교내소식지 및 각종 기고	5		
	사회 및 교회봉사 활동	사회봉사활동	5		①사회공익 단체나 기관에서 10시간 이상 행한 봉 사만 인정, 교회봉사는 제외 ②해외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봉사
		교회봉사활동	5		
	봉사관련 훈 장 및 포상	국가의 훈장, 대 통령, 총리, 장관 급 상	10		①협동목사, 교육목사, 교단 및 교회전문교역자, 주교부장, 성가지휘, 반주, 솔리스트, 전도사, 교사, 성 가대, 기타 교회봉사 ②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만 인정 ③권사, 집사 등 직분 자체는 제외하고 시무장로는 봉사로 인정
		각종 법인 기관 단체장 상	5		
기타활동 (10점) *가산점	기 타	학교홍보활동 *증빙첨부	5		교회나 단체에 학교홍보집회, 홍보세미나 및 설교, 찬양, 세미나인도, 순서자(회당1점)
		학교행정협조 *정성평가	5		
		총계	100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_____ 인

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_____ 인

별표 4

교원업적 종합 평정표

피평정자	소속:	직급:	성명:
평가 영역		평가 결과	영역별 기준
교육업적			1년 40점 이상 6년 240점 이상
연구업적			1년 100% 이상 6년 600% 이상
봉사업적			1년 40점 이상 6년 240점 이상
<u>평가위원장의 종합 의견</u>			

20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인